

의안번호	제524호
의결 연월일	2024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이동우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3월 4일

#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동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2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3월 4일  
발의자 : 이동우, 김종필, 김호경,  
박지현, 박진희, 변종오,  
유재목

## 1. 제안이유

미동산수목원의 다양한 이용 활성화 및 결혼 장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동산수목원 내에 결혼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수목원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제한에 대한 조문 정비(안 제13조)
- 나. 수목원 이용을 활성화하는 결혼식 장소 대여 규정 신설  
(안 제13조의2)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첨부
- 다. 협의 :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과
- 라. 조례안 예고 : 예고대상(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)

##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수목원과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제한)” 을 “(사용허가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수목원과” 를 “수목원 및” 으로, “사용 허가” 를 “사용허가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수목원과” 를 “수목원 및” 으로, “의한다” 를 “따른다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수목원과” 를 “수목원 및” 으로, “[별지 제1호서식]을 작성하여 연구소장의” 를 “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목원과” 를 “연구소장은 수목원 및” 으로, “각 호” 를 “각 호의” 로, “제한 할” 을 “제한할” 로 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수목원 이용 활성화 등 지원) ① 도지사는 수목원 이용을 활성화 하고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수목원 내 작은 결혼식 장소 지원
2. 결혼식 장소로 수목원 및 시설물 무상대여

3. 그 밖에 도지사가 수목원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절차·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수목원과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제한) ① 수목원과 시설물에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·단체 등은 사전에 연구소장의 <u>사용 허가</u>를 받아야 한다.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② 수목원과 시설물의 사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<u>의한다</u>. 다만, 연구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수목원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[<u>별지 제1호서식</u>]을 작성하여 <u>연구소장의 허가</u>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④ 수목원과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다음 <u>각 호</u>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<u>제한</u>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3조(사용허가 등) ① 수목원 및 ----- ----- ----- <u>사용허가</u>-----.</p> <p>② 수목원 및 ----- ----- -- <u>따른다</u>. ----- -----.</p> <p>③ 수목원 및 ----- ----- <u>별지 서식에 따른</u> <u>신청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</u> <u>여</u> -----.</p> <p>④ 연구소장은 수목원 및 ----- ----- <u>각 호의</u> ----- ----- <u>제한</u> <u>할</u>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의2(수목원 이용 활성화 등 지원) ① 도지사는 수목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결혼을 장려하는</p>

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 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 
있다.

1. 수목원 내 작은 결혼식 장소  
지원

2. 결혼식 장소로 수목원 및 시  
설물 무상대여

3. 그 밖에 도지사가 수목원 이  
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원  
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 
절차·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  
사가 따로 정한다.

## 관계법령

### □ 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

제5조(국립수목원 등) ①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국립수목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등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④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·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·육성하여야 한다.

##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### 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의 이용 활성화 및 결혼 장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동산수목원 내에 결혼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, 법저체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, 이번 개정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